

제일 밑줄입니다,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을 중점 調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明示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4페이지요」하는 委員 있음)

○金洪奎委員 네, 調査實施計劃 그 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제일 밑을 보시면 其他欄에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을 중점 調査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다”라는 明示를 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자 그 말씀이지요?」하는 委員 있음)

네.

그 얘기는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범위 외에도 우리가 調査를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調査委員會에서 認定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도록 明示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이라는 말 빼지요, 그럼」하는 委員 있음)

(「다시 한 번……」하는 委員 있음)

(「流通構造 및 이렇게 되겠네요」하는 委員 있음)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및 이외에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한다” 이렇게 明示를 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제일 마지막줄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및 本 調査…….

(「이외에……」하는 委員 있음)

이외에, 및 하고 이외에 입니까?

○金洪奎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부분에 대해서 調査한다…….

(「調査할 수 있다」하는 委員 있음)

調査할 수 있다…….

○金洪奎委員 調査한다로 하는 것이…….

○委員長 文錫珍 調査한다라고 하지요.

저희들 行政事務調査計劃書 原案 자체가 이렇게 修正된 것으로 해서 原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별도로 修正動議하는 것이 아니고 計劃書 자체의 文句를 그런 式으로 修正하는 것으로, 文句修正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 별도의 다른 意見이 아니고 文句 修正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農水産物 都賣市場管理公社 行政事務調査計劃을 原案대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조사 목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농수산물가 격안정기금을 차입하여 채소경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수립되고 추진되었기에 농안기금을 1년 7개월간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여 국가적 차원의 농안기금의 적절한 사용기회의 상실과 용역비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I. 조사개요

조사기간

○ '95.9.28~'96.3.27(6개월간)

조사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조사시행위원회

○ 재무경제위원회

추진경위

○ '95.8.19-제79회 임시회중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보고중 채

<p>소경매장 건립추진 경위 및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상환에 대한 보고 청취</p> <p>—신선한 채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채소경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미집행으로 농안기금을 반납함으로써 국가적차원의 농안기금의 적절한 사용기회의 상실과 채소경매장 신축 용역비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영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됨.(관련법률 : 지방자치법 제36조①, ②항)</p> <p>○ '95.8.25—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 외 53의원의 조사발의와 찬성자 연서를 받아 제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가 원안(의안번호 42)대로 가결</p> <p>—행정사무조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이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결정(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p> <p>○ '95.9.22—제80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p> <p>II. 조사실시계획</p> <p>1. 조사위원회 구성</p> <p>○ 위원회 구성—8명(명단 별첨#1 참조)</p> <p>※ 단, 필요시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 최대 12명까지 조사위원을 개선 또는 증원하여 조정·운영한다.</p> <p>○ 조사기간중 신속적으로 조사반 편성 운영</p> <p>○ 사무보조자 배치 : 5명(총괄지원 1, 행정지원 2, 기록지원 2)</p> <p>2. 조사일정</p> <p>○ 조사일정표 별첨#2 참조</p> <p>3. 조사요령</p>	<p>○ 조사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업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의 ①항4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업무에 한하여 조사하되, • 채소경매장 신축 관련 사항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계획 수립중이거나 시행중인 주요사업중 투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 • 주차장 관리 및 주차비 부과징수업무, • 사무실·사업장 임대업무 전반, • 기타 도매시장 내 유통구조 및 이외에 본 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 <p>○ 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정한 현지확인, 서류제출 요구, 관련서류 열람 및 관계자의 출석·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 • 조사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유통전문가 및 유통종사자,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선진외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과정 및 제도를 직접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유통구조의 제도개선 도모 ※ 공청회 및 해외비교시찰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결로 시행 <p>4. 조사장소 및 조사활동 시간</p> <p>○ 장소 : 위원회회의실 및 피조사기관</p> <p>○ 시간 :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 또는 의장이 허가한 범위내의 시간</p> <p>5. 조사의 보고 및 처리</p> <p>○ 본 조사가 완료시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p> <p>○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나 피조사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조치함(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 제19조)</p> <p>III. 소요예산</p> <p>○ 조사위원회 활동경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000원×12명×6개월×3회=5,400,000원
---	--

<p>○ 증인 등의 비용지급 • 30,000원×20명=600,000원</p> <p>○ 선진외국 도매시장 비교시찰 • 시찰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소요예산 수립시행</p> <p>○ 공청회 • 공청회 실시계획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소요예산 수립시행</p> <p>IV. 행정사항</p> <p>○ 시장은 본 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한다.</p> <p>○ 사무처장은 본 조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 5명을 배치하며, 현지확인 출장시에는 중형버스 1대를 차출하고, 본 계획에</p>	<p>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p> <p>(별첨 #1)</p> <p style="text-align: center;">조사위원회 편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조 사 위 원</th> <th style="text-align: center;">사 무 보 조</th> </tr> </thead> <tbody> <tr> <td>김 홍 규(광진3)</td> <td>○ 총괄(1명)</td> </tr> <tr> <td>정 수 화(양천3)</td> <td>• 전문위원 안석수</td> </tr> <tr> <td>김 광 순(중랑4)</td> <td>○ 보조직원(4명)</td> </tr> <tr> <td>김 승 건(용산1)</td> <td>• 행정지원 박선영</td> </tr> <tr> <td>박 남 식(서초5)</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백 남 선(용산2)</td> <td>• 기록지원 ○○○</td> </tr> <tr> <td>황 인 명(중랑6)</td> <td style="text-align: right;">○○○</td> </tr> <tr> <td>김 승 자(비례)</td> <td></td> </tr> </tbody> </table>	조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김 홍 규(광진3)	○ 총괄(1명)	정 수 화(양천3)	• 전문위원 안석수	김 광 순(중랑4)	○ 보조직원(4명)	김 승 건(용산1)	• 행정지원 박선영	박 남 식(서초5)	○○○	백 남 선(용산2)	• 기록지원 ○○○	황 인 명(중랑6)	○○○	김 승 자(비례)	
조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김 홍 규(광진3)	○ 총괄(1명)																		
정 수 화(양천3)	• 전문위원 안석수																		
김 광 순(중랑4)	○ 보조직원(4명)																		
김 승 건(용산1)	• 행정지원 박선영																		
박 남 식(서초5)	○○○																		
백 남 선(용산2)	• 기록지원 ○○○																		
황 인 명(중랑6)	○○○																		
김 승 자(비례)																			

(별첨 #2)

조 사 일 정

일 시	대 상 기 관	조 사 장 소	조 사 방 법	비 고
'95. 10월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위원회 회의실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자료요구	
	"	관리공사 회의실	• 업무보고 • 질의·답변 • 서류확인 등 검 증	
'95.11~12월중	"	위원회 회의실	• 증인·참고인 등 출석·신문	
'96. 1~ 2월중	"	선진외국도매시장	• 유통구조 및 계 도 비교시찰	• 별도계획에 의한
'96. 3월중	"	의회 소회의실	•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

※ 본 일정은 의회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일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위원회 개최, 현장조사 등을 시행한다.

<p>4. 서울特別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活動經過報告 (18時 50分)</p> <p>○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金庫 制度改善小委員會 活動 經過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p> <p>小委員長님이신 金相男委員님 나오셔서 그동안 活動經過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小委員長 金相男 時間도 많이 지나가고 이래서 간단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p>	<p>3회에 걸쳐서 小委員會 會議를 開催했습니다. 9月 4日 3時부터 한번 했고, 2次 會議는 9月 15日 2時부터 했고, 3次 小委員會는 9月 21日 6時에 있었습니다.</p> <p>第1次 小委員會에서는 幹事로서 李廷義委員이 選任됐었고, 각 委員 다섯 분에 대해서 分野別로 業務分擔을 해서 서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p> <p>第2次 小委員會에서는 市金庫 關係公務員 즉, 會計課長과 商業銀行 太平路支店長이 出席하셔서 資料도 提出하고, 答辯을 했습니다.</p>
---	--